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  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69호 2009. 9. 17.

**고 시**

제2009-37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..... 2

**공 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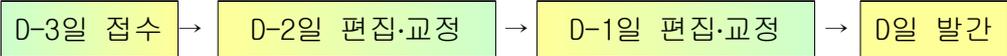
제2009-7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열람 ..... 3  
 제2009-72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7  
 제2009-72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주민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9

**인사발령**

6급이하 공무원 전보 ..... 11  
 일반직 9급 공무원 정규임용 ..... 9

**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**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

- ▶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


## 고 시

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-37호

###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(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)에 대하여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년 9월 17일

중랑구청장

#### 1. 행위제한의 명칭

- 가. 행위제한 종류 : 2010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) 구역
- 나. 명칭 :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#### 2. 행위제한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치 : 서울시 중랑구 묵동 233-31 일대(1.9ha) 외 15개 구역

#### 3. 행위제한 내용

- 가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
  - 1) 건축물의 건축
  - 2) 토지의 분할

#### 4. 행위제한 기간 : 2009.09.17 ~ 2012.09.16(3년)

#### 5. 행위제한 근거 및 사유

- 가. 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
- 나. 사유 : 해당구역 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.

#### 6. 기타사항

- 가. 행위제한 지형도면 및 자세한 사항 [중랑구청 주택과 ☎(02)490-3380~3]  
(행위제한 구역현황 및 지형도면 등)

## 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721호

###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열람

1.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-33(2009.09.10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-17번지의 6필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(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토지,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토지,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.

2009년 9월 17일

중랑구청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-17번지의 6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1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 (공공청사)

2) 사업의 명칭 :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: 1,134.6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 :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
마.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

- 바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- 사. 열람장소 : 중랑구청 자치행정과(490-3313 ~ 4)
- 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따로 붙임
- 자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#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

□ 사 업 명 :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

□ 사업시행자 : 종량구청장

연번	소재지번	지목	면적 (㎡)	실제이용상황 및 편입면적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	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 외의권리		
1	망우동 340-17	대	129.3	건물 부지	129.3	김기항	서울 종량구 상봉동 497 태영아파트상봉동데시앙 1401- 1402	농업협동 조합중앙회 (중화동지점)	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	근저당권		
2	망우동 340-18	대	422.5	건물 부지	422.5	장영순	서울 노원구 공릉동 725 풍림아파트 110- 601	동부농업 협동조합 (신내지소)	서울 종량구 상봉동 155- 9	근저당권		
3	망우동 340-20	대	164.6	건물 부지	164.6	황위순	서울 종량구 망우동 340-20					72.4240㎡
						전정희	서울 용산구 청암동 122-1 강변스튜디오 102					18.4352㎡
						전정미	서울 종량구 중화동 275-3 세화빌라 302					18.4352㎡
						전정애	서울 종량구 중화동 275-3 세화빌라 302					18.4352㎡
						전봉주	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50 파라다이스빌아파트 104- 1105					36.8704㎡
4	망우동 340-26	대	111.1	건물 부지	111.1	박희준	경상북도 상주시 낙상동 770	대한주택 공사 (서울지역 본부)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	전세권		
5	망우동 340-28	대	111.1	건물 부지	111.1	홍정기	서울 종량구 망우동 340- 28					
6	망우동 340-29	대	115.7	건물 부지	115.7	김정득	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30- 4					
7	망우동 340-30	도로	80.3	도로	80.3	이주희	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- 11 미주아파트 3- 1311					

#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

□ 사업명 :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

□ 사업시행자 : 중랑구청장

연번	소재지번	물건의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 또는 면적(㎡)	이용 상황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	
1	망우동 340-17	건물	일반철골 구조	97.87	제조업소 주차장	김기항	서울 중랑구 상봉동 497 태영아파트 상봉동데시앙 1401-1402	농업협동조합중앙회 (중화동지점)	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	근저당권	
2	망우동 340-18	건물	철근 콘크리트조	1,193.28	근린생활 시설	장영순	서울 노원구 공릉동 725 풍림아파트 110-601	동부농업협동조합 (신내지소)	서울 중랑구 상봉동 155-9	근저당권	
3	망우동 340-20	건물	연와조	42.12	주택	황위순	서울 중랑구 망우동 340-20				
4	망우동 340-26	건물	연와조	188.52	주택	박희준	경상북도 상주시 낙상동 770	대한주택공사 (서울지역본부)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	전세권	
5	망우동 340-28	건물	연와조	175.51	주택	홍정기	서울 중랑구 망우동 340-28				
6	망우동 340-29	건물	철근 콘크리트조	281.12	소매점 사무소 주택	김정득	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30-4				

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09년 9월 17일

중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지원대상(안 제5조)

- 1)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 
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.

가) 거주외국인

나) 결혼이민자

다)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

#### 나. 지원사업(안 제6조)

- 1)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  
가)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
나)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 등 상담  
다)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
라)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
마)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
다. 자문위원회의 설치(안 제7조)

- 1)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“중랑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 위원회”를 둘 수 있다.

라.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위탁(안 제11조 및 제12조)

- 1)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2)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마. 외국인에 대한 표창(안 제16조)

- 1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- 가) 구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
- 나)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

바. 명예구민(안 제17조)

- 1)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,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:131-701, 전화:02)490-3313, FAX:02)490-3769, E-mail : jinmin2@j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자치행정과(☎490-3313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09년 9월 17일

중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랑구정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및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, 명예구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선정대상(안 제2조)

1) 명예구민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가)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
- 나)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다)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
#### 나. 대상자 추천(안 제3조)

1) 후보자는 구청장,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.

#### 다. 대상자 선정(안 제4조)

1)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 증서를 수여하며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.

#### 라. 예우 및 사후관리(안 제6조)

- 1)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  - 가)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
  - 나)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
  - 다)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
  - 라) 외국인의 경우 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,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:131-701, 전화:02)490-3313, FAX:02)490-3769, E-mail : jinmin2@j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자치행정과(☎490-3313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인사발령**

**6급이하 공무원 전보**

2009. 9. 9.

중랑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(직위)	직급
1	조민수	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근무를 명함 (출산장려담당)	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	지방행정 주사
2	이지영	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근무를 명함	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	기능10급 지방조무원

**일반직 9급 공무원 정규임용**

2009. 9. 16.

중랑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신민정	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면목본동 근무를 명함	면목본동	지방행정 서기보시보
2	김승준	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면목제2동 근무를 명함	면목제2동	지방행정 서기보시보
3	황찬욱	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상봉제2동 근무를 명함	상봉제2동	지방행정 서기보시보
4	조상록	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목제1동 근무를 명함	목제1동	지방행정 서기보시보
5	신영철	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신내제1동 근무를 명함	신내제1동	지방행정 서기보시보
6	이소현	지방사회복지서기보에 임함 망우본동 근무를 명함	망우본동	지방사회복지 서기보시보
7	윤보람	지방녹지서기보에 임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	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	지방녹지 서기보시보
8	류미연	지방시설서기보(건축)에 임함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근무를 명함	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	지방시설 서기보시보 (건축)